

아산시 공고 제2020-1775호

아산시에서 시행하는 「지방도 624호 (탕정초-탕정농협) 보도설치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6. 22.

아 산 시 장



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지방도 624호 (탕정초-탕정농협) 보도설치공사
- 나. 사업위치 :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산51-3번지 일원
- 다. 사업내용 : 보도설치공사 L=557.9m, B=1.5~2.0m
- 라. 사업기간 : 2020. 6. ~ 2020.12.
- 마. 사업시행자 : 아산시장

2. 보상대상 물건조서의 내용

- 가. 토 지 :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산61-4번지
- 나. 지장물 : 위 토지상에 소재한 모든 지장물건 등 일체

편입 토지 및 물건 지번
○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산61-4

다. 보상대상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은 게재 생략하며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하고
우리시 홈페이지(<http://asan.go.kr>)에 게재

3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가. 열람기간 : 2020. 6. 23. ~ 2020. 7. 10.(18일간)
- 나. 열람장소 : 아산시 도로과 (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, 3층)
- 다. 이의신청 :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

4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시기 : 공고일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
- 나. 보상방법 :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완료 후 현금 계좌 입금
- 다. 산정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
- 라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열람공고 ⇒ 감정평가 실시 ⇒ 보상액 산정 ⇒ 보상협의 요청(보상금 개별 통지) ⇒ 협의(계약체결) ⇒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⇒ (협의 불성립시)수용재결 ⇒ (협의 불성립시)공탁 ⇒ 이의재결 또는 소송

5.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(1인) 추천안내

- 가. 추천요건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
- 나. 추천기한 :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
- 다. 작성요령 : 별도 첨부

6. 기타사항

- 가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- 나.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.
- 다.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 불명,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.
- 라.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, 공사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마. 기타 보상에 관한 내용은 아산시 도로과 도로구조물팀(☎041-540-26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<붙임>

-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-							
추천감정평가 업체명 :							
토지 소재지	당초 지번	편입 면적	토지소유자		소유자 확인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폰)	비 고
			주소	성명			

※ 소유자 확인란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
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
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